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7 선고 2017가합540320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

##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 A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씨에스

담당변호사 정우근

피 고 1.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김재협

2. 주식회사 C

변론 종결 2018. 11. 15.

판결 선고 2019. 1. 17.

##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N

## 청 구 취 지

피고 B와 A 사이에 2016. 12.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는 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2. 21. 접수 제20016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1) 피고 주식회사 C와 A 사이에 2016. 11. 29.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주식회사 C는 A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12. 1. 접수 제1870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가. A은 2017. 10. 13. 서울회생법원 2017회단100138호로 개인회생신청을 하였고, 2017. 10. 26. 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위 법원은 A에 대하여 별도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인 A을 채무자의 관리인으로 보는 것으로 결정하였고, 2018. 1. 22. 회생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에 대한 수계신청을 허가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2. 1. 이 사건 소를 수계하였고, 2018. 12. 13. 이 사건 소 중 구상금청구 부분2)을 취하하였다.

다. 위 개인회생 사건은 2019. 1. 24.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리·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등 현재 폐지되거나 종결되지 아니하고 진행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내용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청구하고 있다.

## 나. 직권판단

1)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47조 제1항, 제406조에 의하면,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부인권을 행사하고,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으며, 개인회생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당시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개인회생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 이러한 규정 취지와 집단적 채무처리절차인 개인회생절차의 성격, 부인권의 목적등에 비추어 보면,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진 후에는 채무자가 총채권자에 대한 평등변제를 목적으로 하는 부인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개인회생채권자가 개별적 강제집행을 전제로 하여 개개의 채권에 대한 책임재산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다37141판결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이미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적법한 수계적격이 있는 채무자가 소송을 수계하여야 하고, 소송을 수계한 회생채무자는 기존의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하여야 한다.

2)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하여 보건대, 회생채권자인 신용보증기금이 2017. 6. 14.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계속 중이던 2017. 10. 26. 서울회생법원2017회단100138호로 A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졌으며, 2018. 2. 1. 회생채무자 A의 관리인인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수계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이 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자취소소송을 부인의 소로 변경해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소를 변경하지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옥, 판사 홍주현, 판사 박태수

## 목 록

1. 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대 850㎡

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위 지상

목구조 스테이지용 1층 창고 계사

1층 110.25㎡ (창고)

2층 46.8㎡ (계사)

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호

위 지상

연화구조 스테이지용 1층 주택 및 대피소

1층 135.15㎡ (주택)

지1층 57.36㎡ (대피소)

2. 가.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창고용지 1,490㎡

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전 1,260㎡

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전 1,130㎡

끝.

1) 원고보조참가인은 2018. 11. 8. 피고 B에 대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보조참가인이 소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기재한다.

2) 구상금청구 부분은 회생채권자인 원고보조참가인이 주채무자 주식회사 D의 연대보증인으로서 A에 대한 구상금 채무에 대한 변제를 구하는 것인데, 주식회사 D의 2017. 7. 18.자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무액이 579,657,701원으로 감경되었고, 원고보조참가인이 A의 개인회생 사건에 제출한 2017. 11. 14.자 회생채권신고서에서 감경된 채권 중 A의 보증채무에 해당하지않는 1,932,902원을 제외한 577,724,799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관리인이 이를 전액 시인하여 사실상 채권이 확정되었다.